

대구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1가단14255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애플

담당변호사 성시형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론

담당변호사 윤태원

변 론 종 결 2024. 3. 7.

판 결 선 고 2024. 4. 18.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 피고와 망 C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8,728,3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188,728,32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21. 2. 1. 사망한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망인에게 2020. 5. 4.부터 2021. 1. 15.까지 수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여 2020. 12. 3.경에는 795,000,000원에 이르렀고, 이후 이 법원 2021하단10958 상속재산 파산신청 사건에서 원고의 파산채권액이 748,543,286원으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으로, 망인이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¹⁾로부터 각 차용하여 예금으로 보유하는 것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20. 5. 4.부터 2021. 1. 22.까지 35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188,728,327원을 송금함으로써(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하고, 각 송금행위를 구분하여 지칭할 경우에는 순번에 따라 ‘제○ 송금행위’라 한다) 이를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송금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으로, 망인은 주식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도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피고에게 위 금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가 이득을 얻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로서는 망인에게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지도 않고 만연히 송금받아 사용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것으로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망인의 무자력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송금행위가 있기 이전에 원고가 망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기 시작하였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대여하여 그 합계액이 7억 원을 넘게 되었는데 이는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망인에 대한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또한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망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송금행위가 8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연속하여 수 십 차례 이루어진 점, 피고가 망인의 배우자인 점, 망인이 피고에게 이체한 금원의 주요 출처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송금행위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이 상당하고, 갑 3 내지 9,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망인에게 예금채권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증권, 차량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는 반면,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이를 상회하는 금액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전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2) 제5, 14, 18 내지 20, 22, 23, 25, 27, 35 송금행위에 대하여

먼저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송금행위 중 위 각 순번 송금행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5 송금행위 당시 망인이 피고 명의 계좌에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금원이 같은 날 곧바로 F, G에게 각 10,000,000원씩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두고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고자 위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을 36, 37, 4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14, 18 내지 20, 22, 23, 25, 27, 35 송금행위는 망인이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아니라 망인 계좌에서 신용카드 사용대금이 가상계좌를 통하여 결제된 내역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금원이 망인 명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증여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나머지 각 송금행위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1 내지 3, 6, 7, 12, 19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송금행위로 지급된 금원은 망인이 피고에게 가족을 위한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피고에게 위 금원을 무상으로 공여하여 이를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려 하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등 참조), 망인이 이 부분 각 송금행위 당시 배우자인 피고에게 위 각 금전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송금행위로 지급된 돈이 피고에게 증여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

② 망인은 부부간 부양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 친권자의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민법 제913조), 직계혈족간의 부양의무(민법 제974조)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 부모에게 학비, 생활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망인이 위 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돈의 범위 내에서는 비록 이로써 망인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양의무의 취지에 반하여 적정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고 부양의무의 이행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행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부양의 정도나 방법은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어 있는바 부양을 받을 자의 연령, 재능, 신분, 지위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반드시 의무교육에 필요한 교육비로 한정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므46 판결 등 참조).

③ 망인과 피고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 1명이 있고, 피고는 원고가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위 각 송금행위 이전부터 망인으로부터 매달 25일경 대략 370여 만 원에서 610여 만 원 정도의 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이를 부부 공동생활 및 자녀 양육, 교육, 부양 등을 위한 생활비로 사용했다. 비록 원고가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위 각 송금행위 중 이전과 비교하여 비정기적이거나 다소 많은 금액이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일부 있기는 하나, 그 무렵 망인이 전업으로 주식투자를 한다면 직장 그만 두어 정기적인 급여 소득이 없었던 점, 망인이 피고와 자녀에게 주식 잔고 내역을 보내거나 투자 상황을 공유하면서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말하였던 점, 위 각

송금행위로 피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대부분이 같은 날 신용카드대금으로 자동이체로 인출된 점 등에 비추어 상당액은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지출내역을 보더라도 주로 식비, 학원비 등 자녀 교육비, 대출금상환, 병원비,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등 공동생활이나 자녀 양육, 부모 부양 등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다. 다만 백화점에서 사용한 내역이 다수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부양의무의 취지에 반하여 적정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거나 부양의무의 이행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3) ⑤ 한편 망인이 피고에게 송금한 내역 중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월 정기적으로 송금되는 생활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부 사이의 예금 인출 및 입금에는 정기적으로 송금하는 생활비 외에도 부양의무와 관련된 추가적, 비정기적인 자금의 필요,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의 자금 위탁 관리 등을 위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28, 29 송금행위는 망인이 코로나19로 입원해 있으면서 피고에게 송금한 것인데, 직후 망인이 사망하였고 피고는 위 금원을 망인의 병원 치료비, 장례비, 신용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이 역시 생활비 내지 부양의무와 관련한 자금의 필요나 편의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피고에게 무상으로 공여하여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증여라고 보기는 어렵다.

⑥ 그 밖에 위 각 송금행위 중 일부는 이전에 피고가 망인에게 대여한 금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바,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는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피고와 통모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제도는 H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H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제3자에게 변제하는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3자가 이를 수령함에 있어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제3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단순히 여기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전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53740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이 부분 청구원인과 관련하여 들고 있는 여러 사정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원고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 및 나아가 그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고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효진

별지

1) D, E

2) 망인은 2020. 4.경 전업 주식투자를 하겠다면서 직장을 그만 두어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예금채권 중 상당 부분은 원고 등 일반채권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기도 하여 이를 전부 망인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3) 원고가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위 각 송금행위 기간 동안 망인과 피고가 지출한 생활비는 199,4541,613원으로서, 이전에 망인과 피고가 2019년도에 지출한 198,488,284원의 생활비에 비하여 다소 많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증여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